

W:WOOSUNG

2024년 4월

## 주간 축산 이슈

# 뉴스 클리핑

4월 4주차 HOT ISSUE

-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 산란계 비과세대상 범위 확대돼야

## 줄줄이 시행 앞둔 규제…이대로면 축분뇨 처리 마비 (1)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축종	발생량 합계	자가 처리[단위: 천톤/연, (%)]				위탁 처리[단위: 천톤/연, (%)]			
		합계	자원화		정화	합계	자원화		정화
			퇴비	액비			퇴비	액비	
합계	50,732 (100)	26,426 (52.1)	20,230 (39.9)	2,800 (5.5)	3,396 (6.7)	24,311 (47.9)	17,962 (35.4)	3,164 (6.2)	3,185 (6.3)
한육우	17,349 (34.2)	14,170 (81.7)	14,170 (81.7)	-	-	3,179 (18.3)	3,179 (18.3)	-	-
젖소	4,618 (9.1)	3,926 (85.0)	3,607 (78.1)	293 (6.4)	26 (0.5)	692 (15.0)	655 (14.2)	-	37 (0.8)
돼지	19,210 (37.9)	6,500 (33.8)	623 (3.2)	2,507 (13.1)	3,370 (17.5)	12,710 (66.2)	6,398 (33.3)	3,164 (16.5)	3,148 (16.4)
닭	8,735 (17.2)	1,575 (18.0)	1,575 (18.0)	-	-	7,160 (82.0)	7,160 (82.0)	-	-
오리	820 (1.6)	255 (31.1)	255 (31.1)	-	-	565 (68.9)	565 (68.9)	-	-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들이 줄줄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규제가 당초 일정대로 모두 현장에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는 양축현장, 특히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대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갈수록 늘어만 가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관련 규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경종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액비 살포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논란과 함께 양축현장의 반발이 거듭되고 있는 시비 처방서만 해도 그 해법이 마련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고여만 가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이어 얼마전 개정된 비료관리법에서도 시비처방서에 따른 액비살포를 규정한데다 환경당국이 시비 처방량과 살포지 등 액비 살포 규정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애그릭스(Agrix) 연계 시스템’ 까지 지난해부터 가동하면서 양축현장의 부담이 극대화 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그대로 따르려면 지금의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으로 액비 살포량이 감소할 것이다. 중앙정부 마음 먹기에 따라 전국의 액비 살포가 마비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액비살포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전자인계-애그릭스 연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만큼 빠르면 올 가을부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치 못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반면 해당시설 상당수가 아직까지 만족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줄줄이 시행 앞둔 규제…이대로면 축분뇨 처리 마비 (2)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축종	발생량 합계	자가 처리[단위: 천톤/연, (%)]				위탁 처리[단위: 천톤/연, (%)]			
		합계	자원화		정화	합계	자원화		정화
			퇴비	액비			퇴비	액비	
합계	50,732 (100)	26,426 (52.1)	20,230 (39.9)	2,800 (5.5)	3,396 (6.7)	24,311 (47.9)	17,962 (35.4)	3,164 (6.2)	3,185 (6.3)
한육우	17,349 (34.2)	14,170 (81.7)	14,170 (81.7)	-	-	3,179 (18.3)	3,179 (18.3)	-	-
젖소	4,618 (9.1)	3,926 (85.0)	3,607 (78.1)	293 (6.4)	26 (0.5)	692 (15.0)	655 (14.2)	-	37 (0.8)
돼지	19,210 (37.9)	6,500 (33.8)	623 (3.2)	2,507 (13.1)	3,370 (17.5)	12,710 (66.2)	6,398 (33.3)	3,164 (16.5)	3,148 (16.4)
닭	8,735 (17.2)	1,575 (18.0)	1,575 (18.0)	-	-	7,160 (82.0)	7,160 (82.0)	-	-
오리	820 (1.6)	255 (31.1)	255 (31.1)	-	-	565 (68.9)	565 (68.9)	-	-

환경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퇴액비 등 국내 양돈분뇨 전체 배출량의 70%(표 참조)를 책임지고 있는 자원화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환경전문가는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마저 1/3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각종 규제 요인을 고려하면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최소한 톤당 1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며 “그나마 관련법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돈이 있어도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론 환경당국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큰 데다 마땅한 대안도 없는 만큼 관련 법률 그대로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가축분뇨 처리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할 경우 환경 당국 역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불가피, 언제라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단시간내에 정화방류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많은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인허가를 제한, 시도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 대부분인데다 그나마 가축분뇨 처리 정책의 기초 마저 자원화에서 에너지화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양돈농가는 “우리 농장의 불투명한 운명을 원인 제공자인 정부나 지자체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바닥 기는 젖소 수송아지 가격…“회복기미 안보여”

젖소 수송아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낙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 축산물가격정보에 따르면 2021년 12월 30일 기준 41만3천원에 이르던 젖소 수송아지 초유떼기 가격은 불과 1년만에 3만2천원으로 곤두박질쳤다. 20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도 2만7천원에 그쳐 가격 하락세가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송아지 가격의 하락은 2022년부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급등과 육우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육우농가의 사육의지가 크게 위축되며 젖소 수송아지의 입식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육우 군납 물량 축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2023년 평균 육우경락가격은 9천331원/kg으로 2021년(1만1천634원) 대비 20%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통계청의 202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우농가의 두당 순이익은 -139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5천원(505.1%) 감소하며 전축종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설상가상 농가현장에선 “이마저도 통계상에 잡히는 수치일 뿐 실제론 1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송아지를 공짜로 준다 해도 겨우 가져갈까 말까”라며 송아지 적체현상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실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낙농경영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젖소 수송아지 초유떼기 처분방법 중 무상공여 비중은 2021년 0.7%였지만 2023년엔 9.2%로 13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여주의 한 낙농가는 “재작년 말부터 심상치 않게 떨어지던 송아지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애물단지가 돼버린지 오래다. 늦게 처분할 수록 사료가격 부담과 높아지는 사육밀도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육우자조금을 활용해 젖소 수송아지 입식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혜택이 농가들이 아닌 중간 상인에게 돌아가는 등의 부작용과 농가참여 미흡으로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젖소 수송아지는 낙농을 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지만, 판매를 통해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미래의 육우고기의 생산 원천으로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과 직접 경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젖소 수송아지 가격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기에 젖소 수송아지 가격 폭락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낙농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며 “젖소 수송아지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입식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사료비 부담 완화, 판로개척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구제역·럼피스킨 백신접종 '순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에 따른 백신접종이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지난해 발생지역 등 총 40개 시·군 소 129만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소와 염소 총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8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과 구제역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있는 당진지역을 방문해 시청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현황과 백신의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와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고위험 지역 및 지난해 발생 지역 총 40곳

강화, 평택, 시흥,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여주, 연천, 수원, 철원, 횡성, 양구, 고성, 청주, 충주, 음성,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서천, 고창, 부안, 임실, 군산, 김제, 무안, 신안, 함평, 영광, 김천, 예천, 창원

##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이달 1일부터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소를 대상으로 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기한이 이전 2주에서 4주로 늘어났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4월 동시 접종분에 한해서라는 설명이다.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진행되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또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의 접종인력 확보 여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에 대한 백신도 재발방지차원에서 지난해 발생지역과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백신접종이 진행 중이다.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백신 부작용 우려도 커졌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백신을 접종한 후 폐사나 유산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기존 2주였던 보상기한이 4주로 확대됐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폐사나 유사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백신 접종 후 2주 내에 발생한 피해만 보상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농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 4주로 확대하게 됐다”면서 “농가들도 이같은 변경사실을 인지하고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동시 접종 부작용 보상기준 안내**

**접종지역**

- 1차 4월: 충남 서산, 전북 고창, 인천 강화 등 고위험 및 발생·인접 지역 40개 시·군
- 2차 5~10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차 미접종 지역 189개 시·군

**접종 부작용 보상기준**

구제역 백신과 동시에 접종 후 4주 이내(현행 2주)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 농가는 백신 부작용으로 폐사·유산 또는 사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접종을 실시한 날부터 4주 이내의 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동시 접종 개체의 접종 후 고열, 식욕부진 등 증상 경감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농가 지원

**접임농** 축협동물병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직접 구매 후 지자체에 청구  
**소규모**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지자체 구매 후 농가에 공급

1 보상금 지급신청서 사·군 제출 (주사 증명서, 진료부 등 첨부) → 2 보상금 결정

3 사·도 제출 → 4 검토 결과 사·군 통보 → 5 보상금 지급

**전국한우협회**

## “ASF 코앞인데…‘청정제주’ 포기 안돼”(1)



제주도의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가 개최된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ASF의 전국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 제주' 사수라는 제주 양돈업계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개정을 통해 2월 5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출을 전격 허용했다.

그러나 제주 양돈업계는 행정절차 마저 무시한 일방통행식 도정으로 인해 제주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유지돼 온 청정환경 붕괴와 함께 축산을 비롯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각계 요로에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 왔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한돈협회)는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한 청원을 통해 돼지 이분도체 반입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이번 청원을 통해 상시 발생하고 있는 ASF 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제주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함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F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심각' 단계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돼지에서도 발생이 이어져 온 현실을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부산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ASF 권역화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에 착수하기도 했다.

제주한돈협회는 "ASF가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정부 방역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도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만약의 제1종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조치에 따른 매립과 오염침출수로 인한 환경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ASF 코앞인데…‘청정제주’ 포기 안돼”(2)



돼지 이분도체 반입 조치가 축산업 육성이라는 제주도의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동안 제주도의 축산업 정책이 청정 생태계 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축산식품의 도외 및 해외 유통 확대를 적극 장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온데다 이 과정에서 ‘제주 돼지=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정착돼 왔지만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제주한돈협회는 행정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제주도의 조치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분도체 반입이 이뤄질 경우 비제주산 돼지고기 확인을 위한 인력 투입 등 행정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위반 사례 발생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피해 및 불신은 물론 관광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이분도체 반입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통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제주산 돼지고기와 가격차도 크지 않아 소비자 혜택도 특별히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제주발전이라는 공익이 기대된다면 우리(양돈업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특정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회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이라는 민선 8기 도지사의 축산정책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같은 제주한돈협회의 청원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 이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수의사,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오는 22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산란계 비과세대상 범위 확대돼야”

축종	축산 비과세 사육규모		
	사육규모(두수)	2012년	2023년
축우	30	50	
양돈	500	700	
양계	15,000	15,000	

\* 소득의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산란계농가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과세대상 적용 수수는 10여년 전과 같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산란계농가의 비과세 대상범위는 지난 2012년 농가 당 1만5천수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재 타 축종의 경우 소는 50두, 돼지는 700두, 양봉은 100군 등이다. 소의 경우 30에서 50두로, 돼지는 500두에서 700두 등 비과세 대상 범위가 조정됐지만 같은 기간 양계농가만 유독 조정이 없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타 축산 농가(소, 돼지 등)들의 비과세대상 사육규모는 내가 알고 있기로 지난 2012년에 상향 됐다”며 “하지만 산란계농가의 경우 배제됐다. 근 10여년동안 (산업이)급격히 커지며 사육규모가 늘어난 산란계농가의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기존에도 산란계농가들은 규모화되고 있는 농가들의 사육환경을 관련 규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과세대상 사육수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도 협회 설립 이후 이같은 사항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고, 회계법인과 공조해 자문을 받아 이를 통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산란계농가의 평균 사육수수가 7만수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산업 크기도 커지고 사육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비과세대상 적용수수는 10여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소규모 농가들이 농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과세 대상 범위를 5만수 가량으로 확대, 이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